

의정부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20가단10664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전 문

원 고 A

피 고 1. B

변론 종결 2021. 1. 21

판결 선고 2021. 2. 18

주 문

1. 피고들은 별지1'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2'감정도' 표시 1, 2, 3, 4, 5, 6, 8, 9, 10,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기) 부분 주택 64㎡ 및 별지2'감정도' 표시 12, 13, 14, 16, 5, 4,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주택 21㎡를 각 철거하고, 원고에게 별지1'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40,246원 및 피고 B은 2020. 11. 18.부터, 피고 C은 2020. 9. 1.부터, 피고 E, G는 2020. 10. 28.부터, 피고 F은 2020. 9. 1.부터 각 제1항 기재 주택 철거 및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각 월 9,45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01,231원 및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제1항 기재 주택 철거 및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47,25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청구원인', 별지4'변경된 청구원인 (1)', 별지5'변경된 청구원인 (라의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E, G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F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3.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망 H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연대하여 미지급 임대료 및 부동산 인도시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판결 참조), 피고들은 자신의 상속분(각 1/5)에 한하여만 금전채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금전청구는 각 피고에 대하여 각 340,246원(=1,701,231원 X 1/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주문 제1항 기재 건물 철거 및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각 월 9,451원(= 47,256원X 1/5)의 범위에서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금전청구는 기각한다(단,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판사 지충현

별지